

## 부속서 I

### 온두라스의 유보목록

#### 주해

1. 이 부속서의 온두라스 유보목록은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온두라스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4조(시장접근)

라. 제10.5조(현지주재)

마. 제9.9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3항에 규정된 대로, 제9.13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라. **유보내용**은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기존의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을 해석함에 있어,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9.13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리고 제9.13조제1항다호 및 제10.6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온두라스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0.2조(내국민 대우), 제10.3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5조(현지주재)에 대하여 행해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1.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온두라스 공화국 헌법 제131호, 제3편, 제2장, 제107조(Decreto No. 131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Título III, Capítulo II Artículo 107)</p> <p>법령 제90-1990호, 온두라스 공화국 헌법 제107조를 규정하는 도시지역 부동산 취득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4조(Decreto No. 90-1990, Ley para la Adquisición de Bienes Urbanos en las Áreas que delimita el Artículo 107 de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Artículos 1 y 4)</p> <p>법령 제968호, 관광지 계획 및 개발 선언법, 제5편, 제5장, 제16조(Decreto No. 968, Ley para la Declaratoria, Planeamiento y Desarrollo de las Zonas de Turismo, Título V, Capítulo V, Artículo 16)</p>
유보내용	<p><u>투자</u></p> <p>국경 및 해안선 40킬로미터 이내의 국유지, 일반 토지 및 사유지 및 온두라스 섬, 사주, 산호초, 방파제, 암석 및 모래 언덕 위의 토지는 출생에 의한 온두라스인, 온두라스 국민이 완전히 소유하는 회사 및 정부기관만이 어떠한 명의 하에서도 취득, 소유 또는 보유할 수 있다.</p> <p>앞의 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인도 그러한 지역의 도시 토지를 최대 40년(갱신 가능)까지 취득, 소유, 보유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온두라스 관광 협회(Instituto Hondureño de Turismo)에 의하여 관광 목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개발, 또는 공익을 위하여 인증 및 승인되어야 한다.</p> <p>도시 토지를 취득, 소유 또는 보유하는 어떠한 인도 온두라스 관광 협회(Instituto Hondureño de Turismo)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토지를 양도할 수 있다.</p>

2.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131호, 온두라스 공화국 헌법 제3편, 제2장, 제137조(Decreto N o. 131,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Título III, Capítulo II, Artículo 137)  법령 제189-59호, 온두라스 노동법 제11조(Decreto No. 189-59, Artículo 11 Código de Trabajo de Honduras)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의 최대 쿼터는 최대 10퍼센트로 설정되며, 그들은 지급된 총 임금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수령하지 못한다. 두 비율은 국가 경제 보호 및 증진 또는 특정 활동에서 온두라스 기술자 부족의 명백한 사유로 요구되거나 자국 근로자의 능력을 입증하도록 그들을 보호하고자 요구되는 경우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집행부는 노동사회안전부(Ministerio de Trabajo y Prevision Social)를 통하여 발표된 합리적 합의를 통하여 각 회사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동안 두 비율을 최대 10퍼센트 감소시키거나 외국인 근로자 참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증가시킬 수 있다.  회사의 관리자, 이사, 업무집행담당자, 감독관 및 일반 관리자가 각각 총 2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기 비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 노동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외국인은 온두라스에 거주하여야 한다.

3.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최혜국 대우(제9.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131호, 온두라스 공화국 헌법 제6편, 제1장, 제337조(Decreto No. 131,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Título VI, Capítulo I, Artículo 337)
유보내용	<u>투자</u>  소규모 산업 및 무역은 온두라스인을 위하여 유보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그들이 귀화한 시민이고 그들의 출신 국가가 상호주의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한 소규모 산업 또는 무역에 종사할 수 없다.

4.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령 제174-2013호, 2014.2.1, 협동조합법 제18조, 제19조 및 제93조(Decreto No. 174-2013 del 1 de febrero de 2014, Ley de Cooperativas de Honduras, Artículos 18, 19 y 93)</p> <p>협약 제041-2014호, 2014.4.23, 온두라스 협동조합법 규정 제19조 (Acuerdo No. 041-2014 de fecha 23 de abril de 2014, Reglamento de la Ley de Cooperativas de Honduras, Artículo 19)</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협동조합감독위원회[Consejo Nacional Supervisor de Cooperativas (CONSUCOOP)]가 사전에 승인하는 경우 온두라스에 비온두라스인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다. 그러한 승인은 다음의 경우 부여된다.</p> <p>가. 사회 및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있는 경우, 그리고</p> <p>나. 출신 국가에 상호주의가 있는 경우</p>

5. 분야	관세사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규정 제224-2008호(COMIECO XLIX)의 부속서 중미통일관세규정 제 76호[Anexo de la Resolución No. 224-2008 (COMIECO XLIX) Reglamento del Có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Artículo 76]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관세사는 중미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6. 분야	농업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협의 제2124-92호, 농지개혁 토지재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2조 (Acuerdo No. 2124-92, Reglamento de Adjudicación de Tierras en la Reforma Agraria, Artículos 1 y 2)
유보내용	<u>투자</u>  농지개혁 수혜자는 개인이나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농업종사자 기업의 일원으로 출생에 의한 온두라스 국민이어야 한다.



7.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51-2011호, 2011.7.15, 투자 촉진 및 보호법 제56조(Decreto No. 51-2011 del 15 de Julio de 2011, Artículo 56, Ley para la Promoción y Protección de Inversión)
유보내용	<p><u>투자</u></p> <p>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sup>1</sup>이 온두라스에서 무역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p>

---

<sup>1</sup> 이들은 온두라스에 합법적 거주지가 없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간주된다.

8. 분야	유통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령 제804호에 의하여 개정된 대로, 법령 제549호 제4조, 국내 및 외국회사의 대표, 유통업체 및 대리인에 관한 법률(Decreto No. 549, Artículo 4, reformado por Decreto No. 804, Ley de Representantes, Distribuidores y Agentes de Empresas Nacionales y Extranjeras)</p> <p>협약 제669-79호, 국내 및 외국회사의 대표, 유통업체 및 대리인에 관한 법률 규정 제2조(Acuerdo No. 669-79, Reglamento de la Ley de Representantes, Distribuidores y Agentes de Empresas Nacionales y Extranjeras, Artículo 2)</p>
유보내용	<p><u>투자</u></p> <p>면허권자는 온두라스 국민이거나 온두라스 기업일 것이 요구된다.</p> <p>대표, 대리인 또는 유통업체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은 사전에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온두라스 기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기업 자본의 최소 51퍼센트를 온두라스인이 보유하여야 한다.</p>

9.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서비스 - 우편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120-93호, 온두라스 우체국 기본법 제3조 및 제4조(Decreto No. 120-93, Ley Orgánica de la Empresa de Correos de Honduras, Artículos 3 y 4)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온두라스 우편시스템 운영은 온두라스 우정청[Empresa Hondureña de Correos (HONDUCOR)]에 배타적으로 유보된다.<sup>2</sup></p>

<sup>2</sup> 다만, 이는 특급 배달 서비스에는 독점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10. 분야	전기에너지 서비스
하위분야	전기에너지 송전 및 배전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404-2013호, 전기산업 일반법 제4조, 제6조 및 제7조(Decreto No. 404-2013 Ley General de la Industria Eléctrica, Artículos 4, 6 y 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전력서비스 발전, 송전 및 배전은 사기업, 공기업 또는 혼합자본 법인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으며 회사로 설립되어야 한다.  운영허가는 에너지 규제위원회가 부여할 것이다.

11.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라디오, 텔레비전 및 신문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령 제131호, 온두라스 공화국 헌법 제2장, 제73조, 제3항(Decreto N o. 131,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Capítulo II, Artículo 73, párrafo tercero)</p> <p>법령 제6호, 사상의 자유에 관한 법 제4장, 제30조(Decreto No. 6, Ley de Emisión del Pensamiento, Capítulo IV, Artículo 30)</p> <p>법령 제759호, 온두라스 기자협회법 제8조, 1981.1.1 법령 제79호에 의하여 개정(Decreto No. 759, Ley del Colegio de Periodistas de Honduras, Artículo 8, reformado por Decreto No. 79 del 1ero de enero de 1981)</p>
유보내용	<p>투자</p> <p>오직 출생에 의한 온두라스 국민만이 인쇄 신문,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및 이들의 지적, 정치적 및 행정적 지휘를 하는 관리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sup>3</sup></p>

<sup>3</sup> 이는 온두라스 밖에 설립된 신문 또는 뉴스 매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2.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령 제185-95호, 통신분야기본법 제1장, 제26조(Decreto No. 185-95, Ley Marco del Sector Telecomunicaciones Capítulo I, Artículo No. 26)</p> <p>협약 제141-2002호, 2002.12.26, 통신분야기본법 일반규정 제3편, 제1장, 제93조(Acuerdo No. 141-2002 de fecha 26 de diciembre del 2002, Reglamento General de la Ley Marco del Sector de Telecomunicaciones, Título III, Capítulo I, Artículo 93)</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외국 정부는 공공 통신 서비스 제공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p>

13.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령 제185-95호, 통신분야기본법 제1장(Decreto No. 185-95, Ley Marco del Sector de Telecomunicaciones, Capítulo I)</p> <p>협약 제141-2002호, 통신분야기본법 일반규정(Acuerdo No. 141-2002, Reglamento General de la Ley Marco del Sector de Telecomunicaciones)</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양해된 통신서비스의 경우, 직접, 간접 또는 경제집단의 일부로 법인 자본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파트너”로 간주된다.</p> <p>애초에 온두라스 내에서 완료되지 못한 국제전화 때문에 직접 발생하고 시스템상 온두라스 밖이 발신지인, 온두라스 내에서 제공되는 전화서비스를 구성하는 콜백은, 금지된다.</p>

14.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협약 제141-2002호, 통신분야기본법 일반규정 제3편, 제1장, 제93조 (Acuerdo No. 141-2002 de fecha 26 de diciembre del 2002, Reglamento General de la Ley Marco del Sector de Telecomunicaciones, Título III, Capítulo I, Artículo 93)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외국 기업은 온두라스 내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온두라스에 주소를 둔 법적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p>



15. 분야	건설서비스
하위분야	건설 또는 컨설팅 서비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토목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령 제47-1987호, 온두라스 토목공학협회 일반법 제67조(Decreto N o. 47-1987,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Civiles de Honduras, Artículo 67)</p> <p>온두라스 토목공학협회 일반법에 관한 규정 제100조 (가)부터 (라)까지 및 제101조[Reglamento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Civiles de Honduras, Artículos 100 (A) – (D) y 101]</p> <p>법령 제753호, 온두라스 건축사협회 일반법 제37조 (나), (다), (라), (사) 및 (아)[Decreto No. 753,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Arquitectos de Honduras, Artículos 37 (b), (c), (d), (g), y (h)]</p> <p>온두라스 건축사협회 일반법에 관한 규정 제4조(아), 제7조 (가), (다), (라) 및 (아), 제13조, 제68조 및 제69조[Reglamento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Arquitectos de Honduras, Artículos 4(h), 7(a), (c), (d) y (h), 13, 68 y 69]</p> <p>법령 제902호, 온두라스 기계, 전기 및 화학 협회 일반법 제40조 (다), (라) 및 (아)[Decreto No. 902,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Mecánicos, Electricistas y Químicos de Honduras, Artículo 40 (c), (d) y (h)]</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컨설팅 및 건설회사는 온두라스 토목공학협회(Colegio de Ingenieros Civiles de Honduras - CICH) 회원이 되고 온두라스에서 토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온두라스 법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법에 따라 조직된 컨설팅 및 건축 회사는 특정 토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온두라스 토목공학협회에 잠정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외국이 소유한 기업에는 더 높은 회원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에 더하여, 외국인 직원은 그러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온두라스 토목공학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16. 분야	유통서비스
하위분야	석유 제품(액체 연료, 자동차 오일, 디젤, 등유 및 LPG)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령 제549호, 자국 및 외국회사의 대표, 유통업자 및 대리인에 관한 법률, 제1장 및 제6장, 제4조 및 제2조(Decreto No. 549, Ley de Representantes, Distribuidores y Agentes de Empresas Nacionales y Extranjeras, Capítulo I y VI, Artículos 4 y 2)</p> <p>법령 제804호, 자국 및 외국회사의 대표, 유통업자 및 대리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개정(Decreto No. 804, reforma el Artículo 4 de la Ley de Representantes, Distribuidores y Agentes de Empresas Nacionales y Extranjeras)</p>
유보내용	<p><u>투자</u></p> <p>온두라스 국민 및 온두라스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만이 석유 제품 판매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온두라스 국민에 의하여 최소 51퍼센트 소유되어야 한다.</p>

17. 분야	엔터테인먼트서비스
하위분야	복권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438호, 1977.4.23, 국립아동복지기금 기본법 제5조(다)(Decreto No. 438, de fecha 23 de abril de 1977, Artículo 5 (c), Ley Orgánica de Patronato Nacional de la Infancia)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국립아동복지기금[Patronato Nacional de la Infancia (PANI)]은 국가가 발행하는 복권을 배타적으로 운영한다.</p>

18. 분야	교육서비스
하위분야	사립 유치원, 초등 및 중등 교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131호, 온두라스 공화국 헌법 제3편, 제8장, 제34조, 제166조 및 제168조(Decreto No. 131,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Título III, Capítulo VIII, Artículos 34, 166 y 168)  법령 제79호, 교육 기본법 제64조 및 제65조(Decreto No. 79, Ley Orgánica de Educación, Artículos 64 y 65)  법령 제136-97호, 교원 기본법 제7조 및 제8조(Decreto No. 136-97, Ley del Estatuto del Docente, Artículos 7 y 8)  행정결정 제0760-5E-99호, 교원 기본법 일반규정 제6조(Acuerdo Ejecutivo No. 0760-5E-99, Reglamento General del Estatuto del Docente, Artículo 6)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학교 이사 및 관리인은 출생에 의한 온두라스인이어야 한다.  교육시스템의 모든 단계의 교사는 출생에 의한 온두라스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중등 교육과정에서 특정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온두라스 국민이 없는 경우 외국 국민이 그러한 과목을 지도할 수 있다. 앞 절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국민의 출신 국가에서 온두라스 국민에 대하여 상호주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외국 국민은 온두라스의 헌법, 윤리, 지리 및 역사를 지도할 수 있다.  모든 단계의 사립학교는 온두라스 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학교의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은 없다.

19. 분야	엔터테인먼트서비스 - 음악 엔터테이너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123호, 1968.10.23, 음악예술가보호법 제1조부터 제4조까지(D ecreto No. 123 de fecha 23 de octubre de 1968, Ley de Protección a los Ar tistas Musicales, Art ículos 1 - 4)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상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두라스는 온두라스에서 단독으로 또는 단체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음악가가 그들의 수수료의 5퍼센트를 온두라스 예술가연합(Sindicato de Artistas de Honduras)에 지급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매니저 또는 임차인이 동일한 공연에 국내 음악가를 고용하는 것에 동의한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인 음악가는 온두라스에서 하는 각 공연에 대하여 온두라스 예술가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p>

20. 분야	문화 및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하위분야	선수권대회 및 축구경기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선수권대회 및 시합 축구연맹 1부 아마추어 규정 제9조 및 제10조(Reglamento de Campeonatos y Competencias Liga Nacional de Fútbol No Aficionado de Primera División, Artículos 9 y 10)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외국인 선수 등록의 경우, 내무정의부가 발행하여 그 선수들의 거주 신청서가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 증명서가 요구된다. 축구연맹에 소속된 각 구단은 최대 4명의 외국인 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21. 분야	오락,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하위분야	카지노 및 도박(룰렛, 카드, 펀터, 바카라, 슬롯머신 및 그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488호, 1977.2.16, 카지노 및 도박법 제3조(Decreto No. 488, de fecha 16 de febrero de 1977, Ley de Casinos de Juegos de Envite o Azar, Artículo 3)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출생에 의한 온두라스 국민 및 온두라스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만이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다.

22. 분야	환경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령 제134-90호, 국내법 제13조 (3) 및 (4)[Decreto No. 134-90, Ley de Municipalidades, Artículo 13 (3) y (4)]</p> <p>법령 제104-93호, 일반환경법 제29조 및 제67조(Decreto No. 104-93, Ley General del Ambiente, Artículos 29 y 67)</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국가만이 지방자치 당국을 통하여 공공용수 배급, 폐기물 처리 및 위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당국은 수도 건설, 식수·위생적인 하수·배수 유지 및 관리 및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집행을 책임진다.</p>



23. 분야	유통서비스
하위분야	도·소매 - 무기, 군수품 및 그 밖의 관련 품목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131호, 온두라스 공화국 헌법 제5편, 제10장, 제292조(Decreto No. 131,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Título V, Capítulo X, Artículo 292)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다음 물품의 도매 및 소매 유통은 온두라스 군대에게만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수품</li> <li>- 전투기</li> <li>- 소총</li> <li>- 41 구경 이상의 모든 등급의 권총 및 리볼버</li> <li>- 온두라스 군대 표준 권총</li> <li>- 모든 등급의 총기류에 대한 소음기</li> <li>- 총기류</li> <li>- 부속품 및 군수품</li> <li>- 총기류용 카트리지</li> <li>- 카트리지 적재를 위하여 요구되는 장치 및 그 밖의 부속품</li> <li>- 화약, 폭발물, 캡 및 퓨즈</li> <li>- 방독면, 그리고</li> <li>- 공기총</li> </ul>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업적 목적을 위한 폭발물의 사용은 적절한 온두라스 당국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다.</p>

24. 분야	조사서비스
하위분야	조사 및 보안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156-98호, 경찰기본법 제91조(Decreto No. 156-98, Ley Orgánica de la Policía Nacional, Artículo 91)  규정 제0771-2005호, 2005.6.18, 제5조 및 제15조 t), u) 및 v)[Reglamento N o. 0771-2005 de fecha 18 de junio de 2005, Artículos 5 y 15, letras t), u) y v)]
유보내용	<p><u>투자</u></p> <p>사설 경비 서비스 제공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는 외국 회사는 동일한 분야에 종사하는 온두라스 회사와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온두라스 태생의 온두라스 국민을 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p> <p>외국인은 사설 경비 회사 운영을 위한 승인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피고용인의 경우, 보안관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무부 장관 및 노동사회보장국 장관(Secretaría de Estado en el Despacho de Relaciones Exteriores y Secretaría de Trabajo y P revisión Social)으로부터 받은 허가증 사본</li> <li>- 외국인 파트너는 권한 있는 당국이 인증한 그들의 출신 국가 및 거주지로부터의 범죄기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li> <li>- 출신 국가 및 거주 국가 모두로부터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인증된 범죄기록 원본</li> </ul>

25.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 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55-2004호, 2004.5.19, 민간항공법 제8편, 제1장, 제106조 및 제149조(Decreto No. 55-2004, 19 de mayo de 2004, Ley de Aeronáutica Civil, Título VIII, Capítulo I, Artículos 106 y 149)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온두라스 내의 두 지점 간 공공 항공 운송 서비스는 온두라스 회사에 유보한다.</p> <p>온두라스 회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 한다.</p> <p>가. 자본의 최소 51퍼센트는 온두라스 국민 또는 회사의 소유이어야 한다. 그리고</p> <p>나. 회사에 대한 실효적 지배 및 관리 또한 온두라스인이 하여야 한다.</p> <p>보수를 위한 민간 특수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두라스 민간 항공 기관(Agencia Hondureña de Aeronáutica Civil)의 승인이 요구되며 제공자는 온두라스 국민 또는 회사이어야 한다.</p>

26. 분야	해상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연안 항법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령 제167-94호, 상선기본법, 1995.1.2, 제2편, 제3편, 제7장, 제40조 (Decreto No. 167-94, Ley Orgánica de la Marina Mercante Nacional, de fecha 2 de enero de 1995, Título II, III, Capítulo VII, Artículo 40)</p> <p>협약 제000764호 해상운송규정, 1997.12.13, 제6조(Acuerdo No. 000764, Reglamento de Transporte Marítimo de fecha 13 de diciembre de 1997, Artículo 6)</p> <p>법령 제154호, 어업법 제4장, 제26조(Decreto No. 154, Ley de Pesca, Capítulo IV, Artículo 26)</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상업 목적을 위한 연안 항법은 온두라스 상선에 유보한다. 온두라스 상선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상황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선이사회(Dirección General de la Marina Mercante)는 외국 상선이 온두라스에서 연안 항법을 제공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중미국가 선박에 우선권이 부여된다.</p> <p>온두라스 상선은 온두라스 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며 납입자본의 최소 51퍼센트가 온두라스 국민에 의하여 소유되어야 하고 회사가 온두라스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생에 의한 온두라스 국민만이 상업용 어선의 선장이 될 수 있다.</p>

27.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운송서비스 - 철도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48호, 온두라스 철로설치법 제1장 및 제8장, 제32조 및 제12조 법령 제54호에 의하여 개정(Decreto No. 48, Ley Constitutiva del Ferrocarril Nacional de Honduras, Capítulos I y VIII, Artículo 32 y Artículo 12 reformado mediante Decreto No. 54)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온두라스 국립철도(Ferrocarril Nacional de Honduras)는 온두라스 국민 및 온두라스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에게만 자신의 자회사를 매각할 수 있다.  온두라스 국립철도의 고위 관리인은 출생에 의한 온두라스인이어야 한다.

28. 분야	그 밖의 사업 서비스 - 창고업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협약 제0681호, 일반창고규정, 2005.10.24, 제5조(Acuerdo No. 0681, Reglamento de los Almacenes Generales de Depósitos, del 24 de Octubre de 2005, Artículo 5)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고정자본으로 온두라스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창고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만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p>

29.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유보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음
유보내용	<p><u>투자</u></p> <p>온두라스는 기존의 공기업 또는 기존의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한국의 투자자의 지분이나 자산의 소유권 및 그러한 지분이나 자산의 소유자가 그 결과인 기업을 통제하는 능력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러한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 온두라스는 고위경영진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p> <p>이 유보의 목적상,</p> <p>가.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 시점에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권에 금지 또는 제한을 부과하거나 이 유보안에 기술된 국적 요건을 부과하는 조치로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유지되거나 채택되는 모든 조치는 기존의 조치로 간주된다. 그리고</p> <p>나. “공기업”이란 온두라스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지분을 통하여 통제하는 기업을 말하며, 기존의 공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이나 처분만을 목적으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설립된 기업을 포함한다.</p>